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7. 1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24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7.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교육 경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골자

-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간소화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심의위원회 정비
 - 심의위원중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삭제하고 개최 횟수를 명시함(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에 관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제7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유지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기를 ‘정기예산 편성시’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 의결시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7 호
----------	---------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간소화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나. 심의위원회 정비
 - 심의위원중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삭제하고 개최 횟수를 명시함(안 제10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6.7~ 6.19, 12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미반영)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로,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제2조제4호 중 “운영사업”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중 “규정에 적용을”을 “적용을”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하며, “국장급 2명”을 “국장급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며”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축할”을 “위축 해제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기예산 편성시에”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는 제2호로 한다.

1.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제13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u>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2. (생략)</p> <p>3. <u>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u></p> <p>4. <u>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u></p> <p>5. 6. (생략)</p> <p>7.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p> <p><u>〈신설〉</u></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u>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u></p>	<p>제1조(목적) ----- ----- ----- <u>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u> ----- <u>학교-----</u> ----- ----- <u>필요한</u> -----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u></p> <p>4. ----- <u>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u></p> <p>5. 6. (현행과 같음)</p> <p>7. <u>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u></p> <p>8.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 ----- -----</p>

(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위원 1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 적용을 -----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

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의회에서-----, 교육위원 ---, -----
-----국장급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2명-----
-----.

④----- 하되 한 차례만 -----

-----.

⑤ -----
-----위촉 해제할
-----.

1. ~ 2. (생략)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0조(회의) ①, ② (생략)

③정기회는 정기에 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생략)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능) ----- 각 호의 사항을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연 1회 -----

④ -----

-----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1.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2.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